

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방향

환경부는 '96. 5. 7. 「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」작성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. 이 계획은 지난 3. 21일 발표된 환경대통령 선언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시행계획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.

환경대통령 선언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, 정부 수범, 환경과 경제의 통합, 사전예방과 오염자 부담 등의 5대 원칙과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, 환경기준의 선진화,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등의 7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.

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이 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하고,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별 세부시행계획을 취합 정리한 후 6월중 총리실 주관 조정회의를 거쳐 전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.

이에 본지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녹색화,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량 제고, 환경교육 및 실천의 강화, 환경기준의 선진화, 환경기초시설의 완비, 환경행정 관리기능의 강화, 환경외교의 강화 등의 "녹색환경나라건설실천계획"을 소개한다.

〈편집부〉

I. 실천계획의 구조

남북한 환경협력과 전지구적 공동노력의 원칙

〈 목 표 〉

〈 7대 정책과제 〉

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움

생산과 소비의 녹색화, 환경자치제의 확대, 환경교육의 강화, 환경기준의 선진화, 환경기초시설의 완비, 환경관리기능 강화 및 효율화, 환경외교의 강화

〈 5대 기본원칙 〉

〈 실 천 계 획 〉

정부수범의 원칙, 환경과 경제의 통합 원칙, 공동책임과 생활 속의 실천 원칙, 사전예방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,

세부과제(22개), 단위사업(85개)

I. 정책과제별 추진방향

1.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

□ 환경친화적 생산구조로의 전환

○ 석유화학·철강·제지 등 에너지 다량소비 및 공해 유발 업종의 에너지 소비효율·자원재활용을 등 환경친화적 산업발전방향 설정(통산부)

○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, 취수원 주변의 영농지역에서는 농약의 안전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(농수산부)

□ 환경친화적 소비행태의 구축

○ 감량화, 재사용, 재활용 등 3R을 국민생활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군별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(내무부, 환경부)

○ 업소의 「좋은 식단」, 가정의 「알뜰 식단」짜기 등의 생활화를 통하여 「음식물 안 남기기」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(복지부, 환경부)

○ 환경마크 부여대상을 재활용품 등 단순 소비재외에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장(환경부, 조달청)

※ 무분별한 환경용어의 표시나 광고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혼란 예방(공정거래위원회)

2. 환경자치제의 확립

□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역량제고

○ 「한국환경기술개발원」의 기존인력을 활용한 「지역환경관리계획지원센터」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을 지원(환경부)

○ '97년부터 자치단체 행정의 환경적합성을 평가(환경부)

- 환경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국고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

□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강화

○ 「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」에 민간으로부터의 환경기금

기탁을 활성화하여 민간환경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(환경부)

○ 「환경 옴브즈만」제도를 운영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제도개선 의견이나 정책건의를 수렴(환경부)

- 자연환경지도관,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하고, 「환경신문고」"128"을 활용하도록 홍보

3. 환경교육 및 실천강화

□ 학교환경교육의 강화

○ 유치원·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강화하고, 교과서의 환경보전관련 편성비율 확대(교육부)

○ 시·도별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을 확대하여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, 교육부·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환경교육담당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기반 조성(교육부)

□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

○ 시민환경강좌(YMCA), 주부환경대학(배달환경) 등 민간단체의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(환경부)

○ 기존인력을 활용한 「지역별 환경교육센터」를 지방환경청에 설치하여 현장견학시설 등을 안내하고 홍보책자 및 VTR 테이프 등 교육교재를 지원(환경부)

□ 녹색환경실천운동의 확산

○ 사회봉사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활동에 녹색환경실천운동을 추가하도록 부탁(환경부)

○ 「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」('90.6.2.제정)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「환경윤리강령」으로 전환(환경부)

4. 환경기준의 선진화

□ 선진환경질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

○ 2000년까지 먹는물 기준항목 43개를 WHO 권고수준인 120개로 확대하는 등 대기환경기준, 수질환경기준 등 강화(환경부)

○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중심 규제방식에서 농도와 양을

함께 규제하는 총량 규제방식으로 전환(환경부)

□ 환경기술의 개발

○ 과학기술연구비중 환경부문 연구비를 점진적으로 확대(과기처, 농수산부, 통산부, 환경부)

○ 수도권 매립지에 국제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(환경부)

□ 환경산업의 육성

= 세계환경시장은 3~4천억불 규모로 추정되며 환경산업을 국가기간산업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=

○ 첨단환경산업을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육성(통산부, 환경부)

○ 종합적인 환경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산업체에 국내외 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(환경부)

5. 환경기초시설의 완비

□ 수질환경기초시설의 확충

○ 하수처리장 등 수질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(재경원, 내무부, 환경부)

구분	단위	'95	2001	2005	비고
하수처리율	%	45	65	80	미국:73('86)
하수관거 보급율	"	61.6	71	80	

○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민간의 전문운영체제를 도입(환경부)

□ 상수도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

○ 상수도를 확충하여 안전한 수도물을 충분히 공급(재경원, 내무부, 건교부, 농수산부, 환경부)

- 2개이상의 자치단체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확충

-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의 먼지역에 '94~

2004년까지 농어촌특별세로 생활용수의 개발을 추진

- 농촌의 마을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중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의 개량을 추진

- 단기간의 가뭄에도 지하수, 우물 등이 고갈되는 도서 지역의 상습적인 급수난을 해소 추진

- 공단하류 등 원수의 수질이 나쁜 18개 정수장에 활성탄·오존처리 시설 등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

□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

○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(재경원, 환경부)

- 2개 이상의 시·군이 향후 10년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광역매립지를 전국 20개 권역에 설치

- 광역매립지 설치가 곤란한 시·군에는 단독매립지를, 농어촌지역에는 매립·소각·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설치

- 매립지 확보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중·대형 소각시설 설치와 도서지역에 소형소각시설 설치

- 매립위주 처리에서 발생지역 단위로 소각·매립·재활용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처리하는 시설의 설치 방안 강구

도시형 = 소각+재활용+부대시설

농어촌형 = 소각+매립+재활용+부대시설

도시형 = 간이소각 + 재활용

- 유해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·호남권 등 6개 권역에 공공처리장을 설치

-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 비축·처리 시설을 설치

□ 환경투자재원 확보

○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물과 자동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,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실효성 제고(환경부)

○ 지방양여금의 수질오염방지사업비의 비율을 조정(내무부)

○ 상·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 수거료를 단계적으로 현

환경정책

실화(내무부, 환경부)

○부과금, 예치금 등 환경투자재원 조달체계의 전면 검토·조정 (환경부)

6. 환경관리기능의 강화

□ "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" 구현

○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(환경부)

○환경친화적 정부경영을 도입하고,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환경성 개념의 도입을 유도(환경부)

○그린GNP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활동에 환경자원의 소모를 반영(환경부)

□ 정부의 환경관리기능 합리적 개편

○수량·수질관리를 조정·연계하는 물관리 체계의 합리적 개편(안)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물관계법령의 일제정비 추진(총리실)

○야생생물·천연기념물·산림과 국립공원 관리기능의 효율화(총무처, 내무부, 농수산부, 문체부, 환경부)

□ 환경분쟁의 조정기능 강화

○집단소송개념을 도입하고, 지역주민·차지단체, 국가간의 분쟁까지 조정하기 위하여 「환경분쟁조정위원회」의 기능 강화(총무처)

□ 해양환경의 보전

○「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개선 (총리실 및 관련 10개 부처)

7. 환경외교의 강화

□ '92 리우정상회의후 환경문제가 국제외교의 중심테마가 되고 있으며, '97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 향후 환경협력방안을 논의예정

※ 미국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신환경외교를 선

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환경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

□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의 참여

○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산업에의 영향에 대처하면서, UNEP 등 UN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(외무부, 통산부)

○환경과 무역의 연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환경정보수집을 위하여 주요공관의 환경외교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환경전문가를 파견(외무부, 통산부, 환경부)

□ 동북아 지역국가 등과의 환경협력

○중국·러시아·일본등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, 황해오염조사 및 유류오염방지를 위한 공동협력 추진(외무부, 과기처)

○국제협력단(KOICA)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전문가 등의 초청교육을 확대하고,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개발도상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지원토록 유도(재정원, 외무부)

□ 한반도 환경공동체의 추진

○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환경실태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,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추진(통일원)

Ⅲ. 향후 추진계획

○'96. 5. 7 :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작성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

○'96. 5. 31 : 주관부처별로 단위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

○'96. 6. 10 : 각 부처의 세부시행계획 취합정리(환경부)

○'96. 6. 14 : 관계부처 1차 조정회의(총리실 주관)

○'96. 6. 20 : 관계부처 2차 조정회의(총리실 주관)

○'96. 6월말 : 청와대 보고

○'96. 9. : 중간평가보고대회 개최